

#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국민은행(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방법) 이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협약은행”이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및 수행원칙) ① “서울특별시”는 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협약은행”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대출을 위한 업체신용평가 등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
3. 제1호에 의하여 대출 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③ “협약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다.

④ “협약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협약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신업무 관련 법령·규칙 및 지침등에서 금지하는 예금 등의 구속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출조건) ① “협약은행”은 이 협약에 의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출조건을 준수한다.

1. 대출금액 : “서울특별시”가 추천·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이내.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결정·통보한다
2. 대출금리 : “협약은행”은 “서울특별시”가 용자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되, 금리결정을 CD연동제(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을 기준으로 한다.

		대 출 금 리		
담보 종류별		기준금리	가산금리	비고
신용보증서	100%	CD (91)	2.0%	
	90%		2.3%	
	85%이상		2.5%	
	85%미만		3.0%	
부동산 및 기타 담보			2.5%	
전액 신용대출			3.5%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kofiabond.or.kr)에서 고시하는 CD 유통수익률(91일), 전주 목요일 종가 기준 (휴일인 경우 기준일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				
* 가산금리 : 담보종류별로 정하되 2.0%~3.5%를 초과할 수 없다.				

3.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2년만기 일시 상환), 5년(1년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 4년(1년거치 3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 3년(1년거치 2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의 방법 중 대출신청 업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대출업무의 관리) 이 협약에 의한 대출업무의 총괄관리는 “협약은행”의 본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영업점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협약은행”은 “협약은행”이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결정한 금리에서 업체에 대출하고 다음 각호의 대출금액 규모에 의거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그 금리차액(이차보전금) 연 1.5~1.0%의 금리를 “협약은행”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금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5천만원이하 : 1.5%
2. 5천만원초과 : 1.0%

② 제1항의 이차보전금은 상환기간중에 제4조제1항제2호의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차보전금은 제4조제1항제3호의 대출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하며, 다만, 특별자금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④ “협약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협약은행”은 대출 받은 중소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중소기업 등이 휴·폐업·부도 또는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단 원리금을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완료시까지 유예한다.)
3.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한도액 (5억원)을 초과하여 대출 받은 경우(이 경우는 초과한 금액에 한한다)
4.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이 경우 사유발생일(최초 연체일)로부터 2개월내의 기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⑥ “협약은행”은 제5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이차보전금을 과오 지급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에게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은 제3조의 업무 범위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각각 부담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① “협약은행”은 이 협약에 의한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및 회수 내역을 매월마다 이차보전금 청구시에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고 서울드림머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협약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은행”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 ① “서울특별시” 또는 “협약은행”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때
2. “협약은행”이 제6조제5항 및 제8조를 위반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또는 “협약은행”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에정일 1월전까지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에정일 6월전까지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인계 등) ① 제9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당시 추천된 업체에 대한 대출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관리는 “협약은행”이 관리하며,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이차보전기간까지 “협약은행”에게 지급한다.

② “협약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은행”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모든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거나 이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③ 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8년 1월24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월2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민은행장 허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